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34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백혜련 · 홍기원 · 곽상언
허성무 · 강준현 · 이재강
이수진 · 박용갑 · 민홍철
권향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보호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의 체포·구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시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5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⑩ (생략)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요청 절차
·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⑪ (현행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⑫ 제4항----제7항-----

-----제10항-----
-----제11항-----

-----.